

【별표 3】 임용권 위임 범위

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

1. 인사혁신처 본부

구 분	전보권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국장 등</u> (기획조정관, 인재정보기획관, 공무원노사협력관, 재해보상정책관을 포함한다.)</p>	<p>· 과장급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국 내 전보권</p>

2. 소속기관

구 분	임용권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속기관</u> (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, 소청심사위원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장급을 제외한 4급 및 5급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권 (단, 국가인재원은 과장급 4급 공무원을 포함) · 6급이하 및 전문경력관(나군이하) 임용권 (단,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, 채용은 사전협의) · 관리운영직군 임용권 · 전문임기제 임용권(단, 사전협의)